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케이씨피드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와 2017년 7월 2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케이씨피드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

1 : 0.1412906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

나. 본사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남상면 흥덕길 22

4. 합병기일 : 2017년 9월 26일

5. 주식회사 케이씨피드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7년 8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 2017년 8월 10일 ~ 2017년 8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7년 8월 23일까지 당사 총무팀으로 제출

(송부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20 (주)케이씨피드 총무팀(☎054-332-6512))

2) 실질주주 : 2017년 8월 2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케이씨피드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종류		소유주식수	

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7년 8월 9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20

주식회사 케 이 씨 피 드

대표이사 정한식, 김희철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